#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96

발의연월일: 2021. 4. 2.

발 의 자:도종환·김철민·박완주

서영석 · 안민석 · 유정주

이병훈 · 이상헌 · 인재근

임오경 · 양이원영 의원

(11위)

##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총량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총 43억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또한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약 22조 6천억원(2019년 사행산업백서)으로 매년 3~4%규모로(2009년 16조5천억원 규모, 2009년 사행산업백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산업은 복권류(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만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주류(경마, 경륜·경정) 사행산업분야에

서도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요구받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사행산업이 지나치게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총량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능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1호 신설).
- 나. 매출총량 준수 의무화 및 과징금 부과(안 제16조의2 신설)

- 1)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는 매출 총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 2)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총량 초 과분(순매출액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 사전협의 제도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발행계획은 매년 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함.

## 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기능 신설(안 제18조의5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제공 자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직접 차단(거부·정지·제 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 현장 출입·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안 제26조 신설)

현장 지도·감독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 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매출총량의 준수 및 과징금 부과) ① 사행산업사업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이하 "매출총량"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총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출총량 초과분(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사행산업자는 소관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

- 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행산업사업자는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의 발행 계획을 위원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5(불법사행산업 정보에 대한 조치 등) ① 위원회는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 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출총량의 적용·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행산업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
	<u>항</u>
<u>11</u> . (생 략)	<u>12</u> .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6조의2(매출총량의 준수 및 과
	징금 부과) ① 사행산업사업자
	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
	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액 규
	모에 관한 총량(이하 "매출총
	량"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
	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
	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총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출총량 초과
	분(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을 제외
	<u>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u>
	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신 설>

<신 설>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사행산업자는 소관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행산업사업자는 매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또는 판 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의 발행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세 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8조의5(불법사행산업 정보에 대한 조치 등) ① 위원회는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

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 시판을 관리 ·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 ㆍ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 · 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 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

   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 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26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

<신 설>

 또는 조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원회가 부과·징수한다.